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61 민사부

판 결

사 건 2018가합552887 특허권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
원 고 A 유한회사
피 고 주식회사 B
변 론 종 결 2021. 3. 5.
판 결 선 고 2021. 4. 30.

주 문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제품을 사용, 판매, 양도, 대여, 수입하거나 판매, 양도나 대여를 위한 청약 또는 전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본점, 지점, 사업소, 사무소, 영업소, 공장 또는 창고에 보관 중인 별지 목록 기재 제품의 완제품 및 반제품(완성품의 구조를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아직 완성에 이르지 아니한 물건)을 모두 폐기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22.부터 2021. 4. 3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제품을 생산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제품들의 생산에 사용되는 설비 일체를 폐기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특허 발명

C 주식회사는 D일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특허(이하 '이 사건 특허'라 한다)발명에 대해 출원하여 등록을 마쳤고, 원고는 2016. 11. 9. 이 사건 특허에 대하여 법인분할을 원인으로 한 권리전부이전등록을 마쳤다.

1) 출원일/ 등록일/ 특허번호 : D/ E/ F

2) 발명의 명칭 : G

3) 청구범위

【청구항 1】

화상형성장치 본체에 착탈되는 현상기로서(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감광체가 지지된 제1프레임(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현상롤러가 지지된 제2프레임(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



상기 제1프레임의 측부에 결합되는 고정지지부와(이하 '구성요소 4'라 한다), 상기 제2프레임의 측부에 결합되는 유동지지부와(이하 '구성요소 5'라 한다), 상기 고정지지부와 상기 유동지지부를 연결하여 상기 제2프레임이 상기 현상롤러가 상기 감광체를 향하여 가압되는 방향으로 회동되도록 탄성력을 제공하는 탄력아암이 일체로 형성된 연결브라켓(이하 '구성요소 6'이라 한다).을 포함하는 현상기(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한다)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고정지지부와 상기 유동지지부 사이에는 간격이 형성되며,

상기 탄력아암은 상기 간격의 변화에 따라 상기 탄성력을 발생시키도록 상기 고정지지부와 상기 유동지지부를 연결하는 현상기.

(나머지 청구항 3 내지 11은 생략한다)

4) 발명의 주요 내용

① 기술분야 및 배경기술

[0003] 전자사진 화상형성장치는 화상정보에 대응되어 변조된 광을 감광체에 조사하여 감광체의 표면에 정전잠상을 형성하고, 이 정전잠상에 토너를 공급하여 가시적인 토너화상으로 현상시키고, 이 토너화상을 기록매체에 전사하여 정착시킴으로써 기록매체에 화상을 인쇄한다. 전자사진방식 화상형성장치는 토너가 수용된 현상기를 구비한다.

[0004] 토너는 현상롤러를 포함하는 카트리지의 형태로 제공될 수 있으며, 이 카트리지를 '현상기'라 한다. 현상기는 내부에 수용된 토너가 모두 소비된 경우에는 화상형성장치로부터 탈거되고, 새로운 현상기가 화상형성장치에 장착된다.



[0005] 현상롤러는 감광체에 일정한 nip(Nip)을 가지도록 접촉되거나 또는 감광체와의 사이에 현상갭을 두고 이격되도록 배치된다. 화상빠짐 등의 불량에 없는 양호한 인쇄화상을 얻기 위하여는 nip 또는 현상갭이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현상롤러는 감광체를 향하여 가압된다. 이 가압력이 너무 작으면 화상빠짐 등의 불량이 발생할 수 있으며, 너무 크면 감광체를 파손시키고 현상기 자체의 구동 부하를 증가시키게 된다.

②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0006] 감광체와 현상롤러와의 nip 또는 현상갭을 최소한의 가압력을 이용하여 유지시킴으로써 현상기의 구동 부하를 줄일 수 있는 현상기 및 이를 채용한 전자사진방식 화상형성장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③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0008] 고정지지부와 상기 유동지지부 사이에는 간격이 형성되며, 상기 탄력아암은 상기 간격의 변화에 따라 상기 탄성력을 발생시키도록 상기 고정지지부와 상기 유동지지부를 연결할 수 있다. 상기 유동지지부와 상기 제2프레임은 상기 탄력아암을 변형시켜 상기 탄성력을 형성하도록 결합될 수 있다. 상기 연결브라켓은 플라스틱 사출 성형에 의하여 형성될 수 있다.

④ 발명의 효과

[0014] 첫째, 현상롤러를 감광체를 향하여 가압하는 가압력을 오차가 적은 몰드 스프링을 이용하여 제공함으로써 현상기를 구동하기 위한 구동부하를 줄일 수 있다.

[0015] 둘째, 몰드 스프링을 현상기의 측부에 마련되는 연결브라켓에 일체로 형성함으로써 부품수와 부품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0016] 셋째, 오차에 의한 가압력의 증가를 억제함으로써 스페이서에 의한 감광층의 손상 위험을 줄일 수 있다.

[0017] 넷째, 연결브라켓에 통신부를 배치함으로써 통신부 배치를 위한 추가적인 부품을 생략할 수 있어, 부품비용을 줄일 수 있다.



㉔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0030] 상술한 구성에 의한 화상형성과정을 간략히 설명한다. 대전롤러(2)에 대전바이어스가 인가되고, 감광드럼(1)은 균일한 전위로 대전된다. 노광기(200)는 화상정보에 대응되어 변조된 광을 현상기(100)에 마련된 광로(12)를 통하여 감광드럼(1)으로 주사하여, 감광드럼(1)의 표면에 정전잠상을 형성시킨다. 토너는 교반기(7)에 의하여 공급롤러(4) 쪽으로 이송되며, 공급롤러(4)는 토너를 현상롤러(3)의 표면에 부착시킨다. 규제부재(5)는 현상롤러(3)의 표면에 균일한 두께의 토너층을 형성시킨다. 현상롤러(3)에는 현상바이어스가 인가된다. 현상롤러(3)가 회전됨에 따라 현상nip(D)으로 운반된 토너는 현상바이어스에 의하여 감광드럼(1)의 표면에 형성된 정전잠상으로 이동되어 부착되어 감광드럼(1)의 표면에는 가시적인 토너화상이 형성된다. 픽업롤러(502)에 의하여 적재수단(501)으로부터 인출된 기록매체(P)는 이송롤러(503)에 의하여 전사롤러(300)와 감광드럼(1)이 대면된 전사nip으로 이송된다. 전사롤러(300)에 전사바이어스가 인가되면, 정전기적 인력에 의하여 토너화상은 기록매체(P)로 전사된다. 기록매체(P)로 전사된 토너화상이 정착기(400)로부터 열과 압력을 받아 기록매체(P)에 정착됨으로써 인쇄가 완료된다. 기록매체(P)는 배출롤러(504)에 의하여 배출된다. 기록매체(P)로 전사되지 않고 감광드럼(1)의 표면에 잔류되는 토너는 클리닝 부재(6)에 의하여 제거되어, 폐토너 수용부(11)에 수용된다.

[0032] 현상롤러(3)를 감광드럼(1)을 향하여 가압하기 위하여, 제2프레임(92)을 제1프레임(91) 쪽으로 밀 수 있다. 도5를 참조하면, 제1, 제2프레임(91)(92)의 측부에는 연결브라켓(80)이 결합된다. 예를 들어, 연결브라켓(80)에는 내측으로 돌출된 힌지샤프트(89)가 마련되고, 이 힌지샤프트(89)가 제1프레임(91)의 측부에 마련된 힌지 홀(96)에 삽입될 수 있다. 또, 연결브라켓(80)에는 제1 내지 제3고정보스(88a, 88b, 88c)가 마련되고, 제1프레임(91)과 제2프레임(92)에 마련된 제1 내지 제3고정보스(97a, 97b, 97c)가 이에 삽입될 수 있다. 제1 내지 제3고정보스(97a, 97b, 97c)가 제1 내지 제3고정보스(88a, 88b, 88c)에 삽입되면, 그 상부가 도 6에 점선으로 도시



된 바와 같이 연결브라켓(80)으로부터 돌출되는데, 이 돌출된 제1 내지 제3고정보스(97a, 97b, 97c)를 열용착 방식에 의하여 도 6에 실선으로 도시된 바와 같이 변형시킴으로써 연결브라켓(80)을 제1, 제2프레임(91)(92)의 측부에 결합할 수 있다. 연결브라켓(80)과 제1, 제2프레임(91)(92)을 결합하는 방법은 이에 한정되지 않으며, 예를 들어 나사 등의 체결부재를 이용하여 연결브라켓(80)을 제1, 제2프레임(91)(92)에 결합할 수도 있다.

[0034] 도 5를 참조하면, 연결브라켓(80)은 고정지지부(81)과 유동지지부(82)를 포함할 수 있다. 고정지지부(81)와 유동지지부(82)는 서로 간격(G)을 두고 이격되게 위치된다. 고정지지부(81)와 유동지지부(82)는 탄력아암(83)에 의하여 연결된다. 탄력아암(83)은 간격(G)을 가로질러 고정지지부(81)와 유동지지부(82)를 연결한다. 탄력아암(83)은 힌지 샤프트(89)로부터 연장될 수 있다. 즉, 힌지 샤프트(89)는 제1프레임(91)에 대한 제2프레임(92)의 회동 중심으로 기능할 수 있다. 탄력아암(83)은 현상롤러(3)가 감광드럼(1)을 향하는 방향으로 탄성바이어스되도록 제2프레임(92)에 탄성력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탄력아암(83)은 간격(G)의 변화에 상응하는 탄성력을 발생시킨다. 유동지지부(82)가 제2프레임(92)에 결합될 때에, 유동지지부(82)는 도 8에 점선으로 도시된 바와 같이 탄력아암(83)을 변형시키도록 결합된다. 즉, 제2프레임(92)의 고정보스(97c)가 고정홀(88c)에 삽입되어 결합되면, 유동지지부(82)는 도 8에 실선으로 도시된 자유 상태에서 점선으로 도시된 바이어스 상태가 된다. 탄력아암(83)은 원래 상태로 복귀하려는 경향을 가지므로, 유동지지부(82)에 결합된 제2프레임(92)은 도 8에 화살표시(A)로 표시된 방향으로 회동되도록 탄성력을 받는다. 이 탄성력에 의하여 현상롤러(3)는 감광드럼(1)을 향하여 가압되고, 스페이서(32a)(32b)가 감광드럼(1)의 외주에 접촉되어 현상닙(N) 또는 현상갭(D)이 유지될 수 있다. 상술한 연결 브라켓(80)은 예를 들어 플라스틱 사출 성형에 의하여 형성될 수 있다. 연결브라켓(80)의 재료로는 예를 들어 ABS(acrylonitrile butadiene styrene copolymer)수지, PS(polystyrene)수지, HIPS(high impact polystyrene)수지, PC(polycarbonate)수지 등이 채용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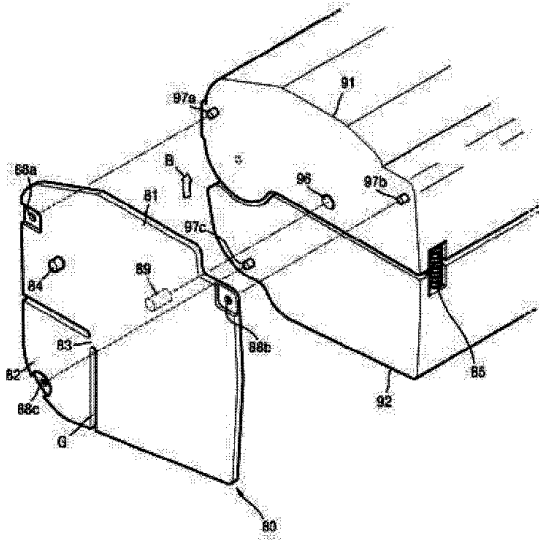


[0041] 본 실시예의 현상기(100)에 따르면, 제1, 제2프레임(91)(92)을 연결하는 연결브라켓(80)의 탄력아암(83)의 변형을 이용하여 가압력을 제공한다. 탄력아암(83)의 변형량은 연결브라켓(80)의 치수 정밀도에 의존된다. 예를 들어 간격(G)가 약 1.5mm이고, 도 8에 점선으로 도시된 바와 같이 유동지지부(82)가 약 1.5mm 정도 편위되었을 때에 약 300gf의 가압력이 나오도록 탄력아암(83)이 설계된 경우를 가정한다. 플라스틱 사출 성형에서 간격(G)의 치수 오차는 약 $\pm 0.05\text{mm}$ 정도로 관리될 수 있다. 따라서, 이 경우에 가압력의 편차는 $\pm(0.05/1.5) \times 100\%$ 정도 이므로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는 약 20gf 정도로서, 설계값에 대하여 약 6.7%의 차이에 불과하다. 따라서, 본 실시예의 현상기(100)에 따르면, 코일 스프링을 적용하는 경우에 비하여 구동 모터에 걸리는 부하 토크를 줄일 수 있어, 구동모터로서 정격출력이 작은 저렴한 모터를 채용할 수 있다. 또한, 스페이서(32a)(32b)에 의하여 감광드럼(1)의 감광층이 손상될 위험 역시 줄일 수 있다. 즉, 가압력을 제공하기 위한 탄성부재로서 오차가 적은 몰드 스프링을 채용함으로써 현상기(100)의 구동부하를 줄일 수 있다. 또한, 몰드 스프링을 현상기(100)의 측부에 마련되는 연결브라켓(80)에 일체로 형성함으로써 부품수와 부품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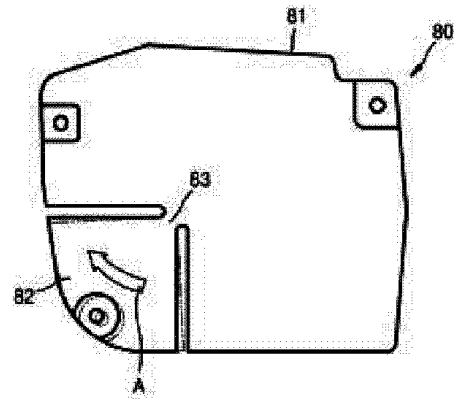
[0045] 현상기(100)가 본체(700)에 장착되는 과정에서 스프링접점(미도시)이 연결브라켓(80)에 접촉되어 연결브라켓(80)이 마모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연결브라켓(80)은 내마모성이 우수한 PC(polycarbonate)수지로 형성될 수 있다.

6 주요 도면

도면 5



도면 8



나. 원고 제품

원고는 이 사건 특허를 실시하여 모델명 'H'인 토너 카트리지를 제조·판매하고 있다.

다. 피고 실시 제품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의 토너 카트리지를(이하 '피고 실시 제품'이라 한다)를 판매하고 있다.

라. 선행발명들

1) 선행발명 1

가) 발명의 명칭: 프로세스 카트리지를, 그 제조방법 및 화상형상 장치

나) 출원일/ 등록일 / 등록번호: 1999. 10. 20. / 2002. 3. 26. / 제0331921호

다) 청구범위

【청구항 1】

감광체드럼이 회전자유롭게 설치된 감광체유닛과

현상롤러가 회전자유롭게 설치된 현상유닛과

상기 감광체유닛과 상기 현상유닛에 각각 형성된 상기 감광체드럼 또는 상기 현상롤러의 양끝부분을 회전자유롭게 보호지지하고, 이 감광체유닛과 현상유닛을 연결할 때에 면접촉하는 측판부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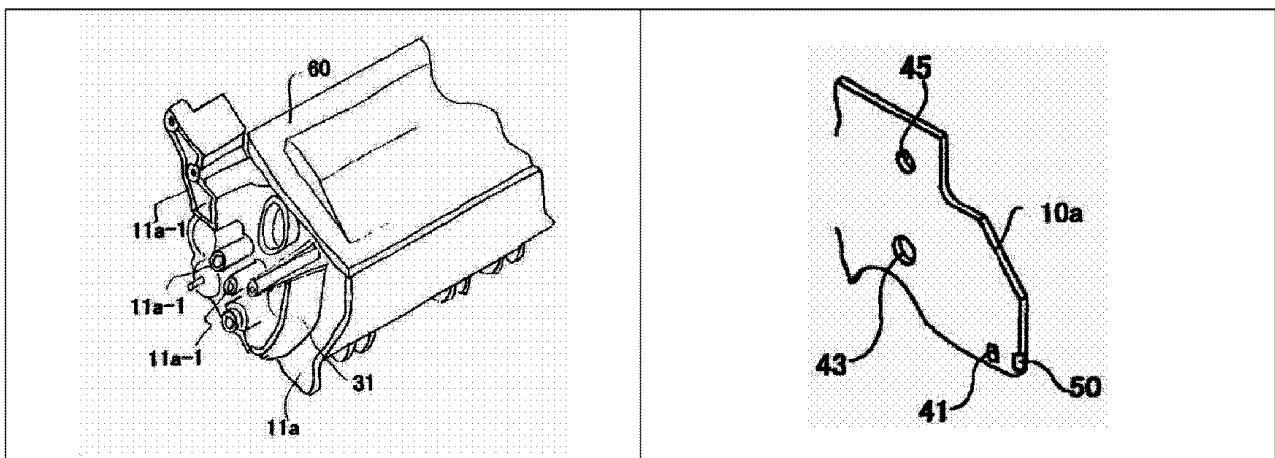
상기 감광체유닛의 상기 측판부와 상기 현상유닛의 상기 측판부에 각각 형성되어 이 감광체유닛과 현상유닛을 연결할 때에 동일중심선상에서 겹쳐 맞추어지는 핀 삽입구와 동일중심선상에서 겹쳐 맞추어지는 상기 핀 삽입구에 삽입되는 연결핀과

어느 한쪽의 상기 측판부에 형성된 끼워맞춤구와

다른 한쪽의 상기 측판부에 형성된 상기 감광체유닛과 상기 현상유닛을 연결할 때에 상기 끼워맞춤구에 탄성적으로 끼워 맞추어지는 끼워맞춤돌기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로세스 카트리지를.

(나머지 청구항 생략)

라) 주요 도면





: 2021-05-11

2) 선행발명 2

가) 발명의 명칭: 프로세스 카트리지 및 프로세스 카트리지용 공간 유지 부재

나) 출원일/ 등록일 / 등록번호: 2003. 2. 22. / 2005. 6. 29. / 제0500070호

다) 청구범위

【청구항 1】

화상 형성 장치의 주 조립체에 탈거가능하게 장착가능한 프로세스 카트리지이며,
전자사진 감광 드럼과,

상기 전자사진 감광 드럼 상에 형성된 정전 잠상을 현상제로 현상하는 현상 롤러와,

상기 전자사진 감광 드럼을 지지하는 제1프레임과,

상기 현상 롤러를 지지하는 제2프레임과,

상기 전자사진 감광 드럼과 상기 현상 롤러가 서로 근접하거나 이격되는 상대적인
운동을 허용하도록 상기 제1프레임과 상기 제2프레임을 회전가능하게 서로 결합시키는
커플링 부재와,

상기 전자사진 감광 드럼과 상기 현상 롤러를 서로 접촉시키도록 상기 제1프레임과
상기 제2프레임을 서로 근접하여 압박하는 압박 부재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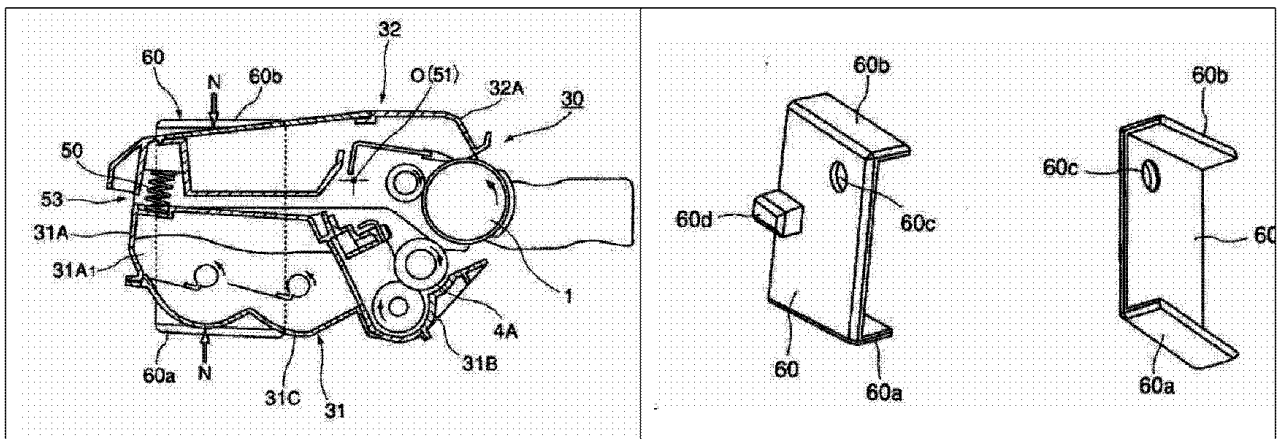
상기 전자사진 감광 드럼과 상기 현상 롤러 사이의 공간을 유지하는 공간 유지 부재
를 포함하고,

상기 공간 유지 부재는 상기 전자사진 감광 드럼의 종방향에 대하여 적어도 그 일
단부에서 상기 제1프레임과 상기 제2프레임에 장착 및 이로부터 탈착가능하고, 상기
공간 유지 부재는 상기 전자사진 감광 드럼과 상기 현상 롤러를 서로 이격시키도록 장
착부 및 상기 제1프레임에 장착될 때 일방향으로 상기 제1프레임의 회전을 규제하기

위한 제1규제부와, 상기 전자사진 감광 드럼과 상기 현상 롤러를 서로 이격시키도록 장착부 및 상기 제1프레임에 장착될 때 상기 일방향과 반대인 다른 방향으로 상기 제2프레임의 회전을 규제하기 위한 제2규제부를 포함하는 프로세스 카트리지.

(나머지 청구항 생략)

라) 주요 도면



3) 선행발명 3

가) 발명의 명칭: 현상카트리지 및 이를 채용한 전자사진방식 화상형성장치

나) 출원일/ 등록일 / 등록번호: 2005. 1. 20. / 2006. 5. 23. / 제0584617호

다) 청구범위

【청구항 1】

정전잠상이 형성되는 감광드럼과, 상기 정전잠상에 현상제를 공급하여 토너화상을 형성시키는 현상롤러를 포함하는 현상 카트리지와, 상기 토너화상을 용지로 전사시키는 전사유닛;을 포함하는 전자사진방식 화상형성장치에 있어서, 상기 현상 카트리지는, 상기 감광드럼이 설치되는 제1프레임;

상기 제1프레임과 피벗가능하게 결합되며, 현상롤러가 결합되는 제2프레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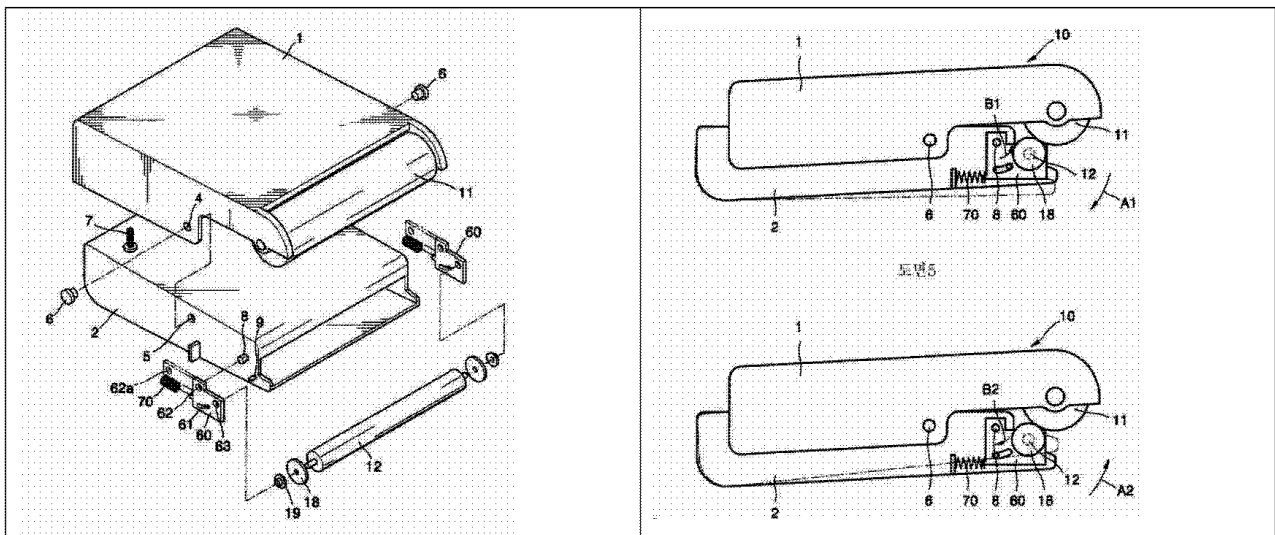
상기 제2프레임이 상기 현상롤러가 상기 감광드럼에 접근되는 방향으로 피벗되도록 탄성력을 부여하는 제1탄성부재;

상기 현상롤러가 상기 감광드럼과 현상갭을 유지하는 위치에 위치되도록 상기 제2프레임의 상기 현상롤러가 상기 감광드럼에 접근되는 방향으로의 피벗을 제한하는 갭유지부재;를 포함하며,

상기 현상롤러와 상기 갭유지부재는 상기 제2프레임의 피벗방향과 반대방향으로 탄력적으로 이동가능하게 상기 제2프레임에 설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사진방식 화상형성장치.

(나머지 청구항 생략)

라) 주요 도면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5호증, 을가 3호증, 을가 7호증, 을가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 4호증의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 실시 제품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으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한다.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침해금지 와 폐기를 청구하고, 피고의 특허침해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2017. 12. 26.부터 2020. 10.까지 입은 손해액을 특허법 제128조 제4항에 따라 산정하면 1억 63만 원이므로, 그 중 일부인 50,000,000원을 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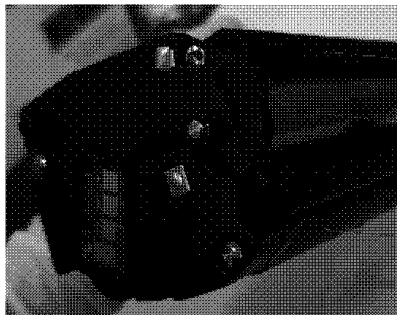
나. 피고의 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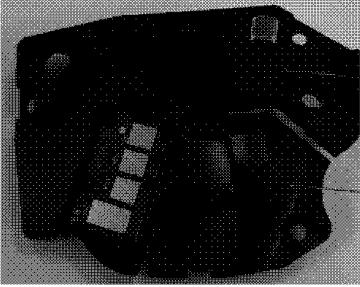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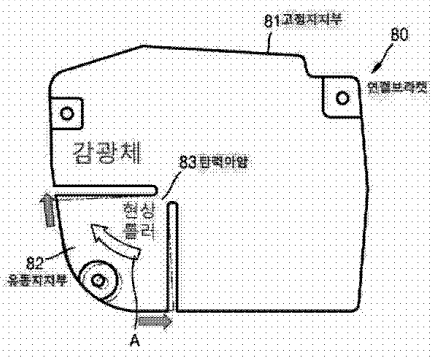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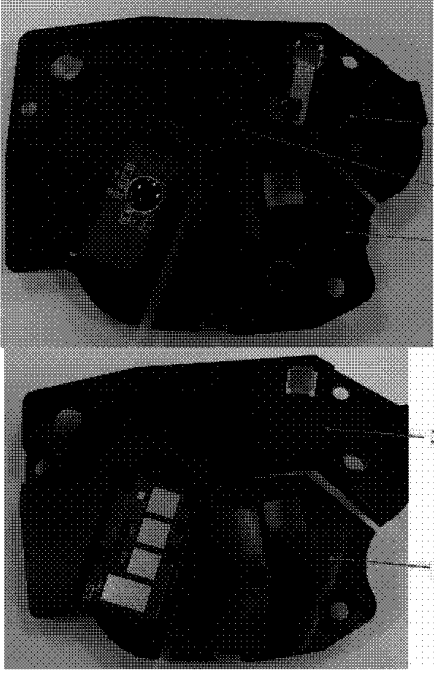
피고 실시 제품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특허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1 내지 3으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어 진보성이 없으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에 기초한 원고의 침해 주장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3. 침해 금지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실시 제품의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1)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피고 실시 제품의 구성 대비

구성 요소	이 사건 제1항 발명	피고 실시 제품
1	화상형성장치 본체에 착탈되는 현상기로서,	
2	감광체가 지지된 제1프레임	
3	현상롤러가 지지된 제2프레임	

구성요소	이 사건 제1항 발명	피고 실시 제품
4	상기 제1프레임의 측부에 결합되는 고정지지부	
5	상기 제2프레임의 측부에 결합되는 유동지지부	
6	<p>상기 고정지지부와 상기 유동지지부를 연결하여 상기 제2프레임이 상기 현상롤러가 상기 감광체를 향하여 가압되는 방향으로 회동되도록 탄성력을 제공하는 탄력아암이 일체로 형성된 연결브라켓을 포함하는 현상기.</p> 	

2) 구성요소 1 내지 5에 대하여

구성요소 1 내지 3은 화상형성장치 본체에 구비되는 현상기에 대한 구성으로, 현상기가 작동하기 위한 기본적인 구성요소인 감광체와 현상롤러를 지지하는 제1, 제2프레임에 대한 것이다. 이에 대응하여 피고 실시 제품에도 동일하게 현상기에 감광체와 현상롤러를 지지하는 제1, 제2프레임이 동일하게 개시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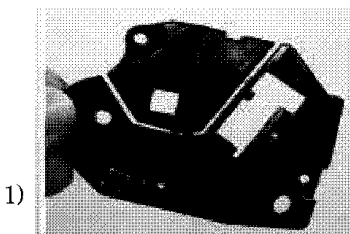
구성요소 4 및 5는 구성요소 2의 제1프레임의 측부에 결합되는 고정지지부와 구성요소 3의 제2프레임의 측부에 결합되는 유동지지부에 대한 구성으로 현상기에서 제2프레임과 연결되어 있는 현상롤러가 유동지지부와 결합되어 움직일 수 있는 구성에 대한 것이다. 이에 대응하여 피고 실시 제품에도 동일하게 제1프레임 측부에 고정지지부가 결합되어 있고, 제2프레임 측부에 유동 지지부가 결합되어 있어 유동지지부와 결합되어 있는 현상롤러가 감광체에 대하여 움직일 수 있는 구성이 개시되어 있다.

3) 구성요소 6에 대하여

가) 구성요소 6은 유동지지부와 고정지지부가 탄력아암에 의해 일체로 연결되어 있고, 탄력아암은 변형에 의한 탄성력을 제공하여 현상롤러를 감광체를 가압하는 구성이다. 이에 대응하여 피고 실시 제품도 고정지지부와 유동지지부가 탄력아암에 의해 일체로 연결되어 있고 위 간격으로 인한 탄성력을 제공할 수 있으므로, 피고 실시 제품은 구성요소 6도 포함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실시 제품에서 고정지지부와 유동지지부는 플라스틱 재질의 두 줄로 연결되어 있다거나¹⁾, 이 사건 제1항 발명에서의 탄력아암은 탄성재질로 만들어진 것이어야 하는데, 피고 실시 제품에서 고정지지부와 유동지지부를 일체로 연결하는 부분은 탄성재질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피고 실시 제품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실시 제품에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탄력아암에





대응되는 부분이 플라스틱 재질의 '두 줄'의 선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청구항 1은 탄력아암이 고정지지부와 유동지지부를 일체로 연결한다고만 기재하고 있고, 청구항 1의 종속항인 청구항 2도 탄력아암은 간격의 변화에 따라 탄성력을 발생시키도록 고정지지부와 유동지지부를 연결하는 현상기라고만 기재함으로써 탄력아암의 형태가 두 줄 형태로 이루어진 경우를 배제하고 있지 않으며, 피고 주장과 같이 두 줄 형태로 고정지지부와 유동지지부를 연결하더라도, 고정지지부와 유동지지부의 '간격의 변화에 따른' 탄성력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음으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에서의 탄력아암이 '탄성재질'로 만들어졌음을 전제로 하는지에 대해 살핀다. ①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2에 탄력아암은 '간격의 변화에 따라' 탄성력을 발생시킨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 연결브라켓은 플라스틱 사출 성형에 의하여 형성될 수 있고(식별번호 [0008] 참조), 탄력아암은 '간격의 변화에 상응하는' 탄성력을 발생시키며, 연결브라켓의 재료로는 예를 들어 ABS(acrylonitrile butadiene styrene copolymer)수지, PS(polystyrene)수지, HIPS(high impact polystyrene)수지, PC(polycarbonate)수지 등이 채용될 수 있으며(식별번호 [0034] 참조), 제1, 제2프레임을 연결하는 연결브라켓의 탄력아암의 변형을 이용하여 가압력을 제공하고, 탄력아암의 변형량은 연결브라켓의 치수 정밀도에 의존하고(식별번호 [0041] 참조), 연결브라켓은 내마모성이 우수한 PC(polycarbonate)수지로 형성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식별번호 [0045] 참조), ③ 연결브라켓은 고정지지부, 연결지지부, 탄력아암이 '일체로' 연결된 구조로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 탄력아암 부분만



다른 재질로 이루어진다는 설명이 전혀 없는 점, ④ 통상의 플라스틱은 변형이 발생하고, 특수한 용도로 제작한 강화 플라스틱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변형의 정도가 통상의 플라스틱에 비해 극히 적을 뿐 변형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탄력아암 부분을 내마모성이 우수한 PC수지로 만들더라도 고정지지부와 유동지지부 사이에 형성된 간격으로 인하여 탄성력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특허발명에서 탄력아암 부분이 탄성재질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한정하여 해석할 수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소결

피고 실시 제품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나. 피고의 권리남용 항변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특허발명에 대한 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어 그 특허가 특허무효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될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특허권에 기초한 침해금지 또는 손해배상 등의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특허권침해소송을 담당하는 법원은 특허권자의 그러한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항변이 있는 경우 그 당부를 살피기 위한 전제로서 특허발명의 진보성 여부에 대하여 심리·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2. 1. 19. 선고 2010다95390 전원합의체 판결).

2)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 결여 여부

가) 선행발명 1과 구성요소 대비

구성요소	이 사건 제1항 발명(갑제2호증)	선행발명 1 (을가 제3호증)
1	화상형성장치 본체에 착탈되는 현상기로서,	감광체 유닛(10)
2	감광체가 지지된 제1프레임;	
3	현상롤러가 지지된 제2프레임;	현상 유닛(11)
4	상기 제1프레임의 측부에 결합되는 고정지지부와,	감광체 유닛(10)의 측판부(10a) 및 현상 유닛(11)의 측판부(11a)
5	상기 제2프레임의 측부에 결합되는 유동지지부와,	
6	상기 고정지지부와 상기 유동지지부를 연결하여 상기 제2프레임이 상기 현상롤러가 상기 감광체를 향하여 가압되는 방향으로 회동되도록 탄성력을 제공하는 탄력아암이 일체로 형성된 연결브라켓을 포함하는 현상기.	감광체 유닛의 측판부(10a)와 현상 유닛의 측판부(11a)는 별개로 형성되어 감광체 유닛의 끼워 맞춤구(41)와 현상 유닛의 끼워 맞춤 돌기(47)의 결합 및 각 측판의 핀 삽입구(40, 46)를 겹쳐서 핀 삽입에 의해 감광체 유닛과 현상 유닛을 결합함
주요도면		



구성요소 1 내지 3은 통상의 화상형성장치의 현상기에 필수적인 구성요소로 감광체와 현상롤러를 지지하는 프레임에 대한 구성인데, 선행발명 1에도 감광체 유닛과 현상 유닛이 동일하게 개시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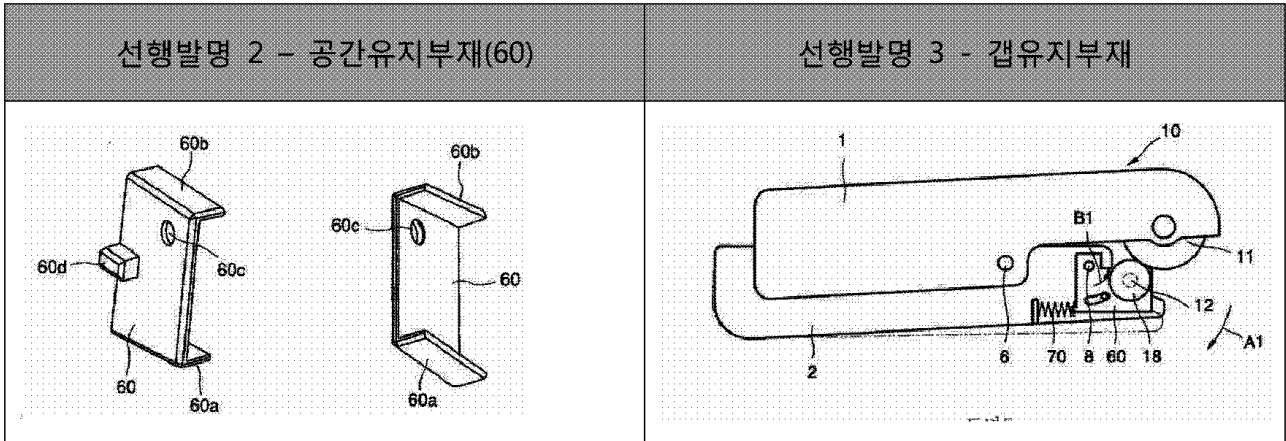
구성요소 4 및 5는 감광체 측부에 결합되는 고정지지부와, 현상롤러 측부에 결합되는 유동지지부에 대한 구성이다. 선행발명 1에서는 감광체 유닛에 측판부(10a)가 결합되어 있고 현상유닛에 측판부(11a)가 결합되어 있어 측판부들이 서로 결합하는 구성으로 감광체와 현상롤러 측부에 지지부가 결합된다는 점에서 양 구성은 동일하다.

그러나 구성요소 6은 고정지지부와 유동지지부가 탄력아암으로 일체로 연결되어 탄력아암에서 탄성력을 제공하는데 반하여, 선행발명 1의 경우 두 측판부(10a, 11a)가 서로 이격되어 있으며 두 측판부(10a, 11a)는 끼워 맞추거나 핀으로 결합하는 방식으로 결합되어 있어 두 측판부(10a, 11a) 자체의 변형이 발생하지 않아 탄성력이 발생하지도 않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선행발명 1은 구성요소 6에 대응하는 구성요소를 구비하고 있지 않다.

나) 선행발명 2, 3과 구성요소 대비

피고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6에 대응하는 것으로 선행발명 2의 공간유지부재 및 선행발명 3의 갭유지부재를 들고 있다. 그러나 선행발명 2 및 3의 공간유지부재 및 갭유지부재 모두 일체로 형성되어 있으나 변형에 의한 탄성력이 발생하지 않고 별도의 스프링에 의한 탄성력으로 감광체와 현상롤러 사이의 갭을 유지하는 것이므로 구성요소 6과 차이가 있다.



다) 소결

위에서 본 것처럼 선행발명들에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모든 구성요소들이 개시되어 있지도 않고, 구성요소 6의 특징적인 구성인 고정지지부 및 유동지지부를 일체로 연결하여 탄성력을 제공하는 탄력아암에 대응되는 구성이 없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러한 구성의 차이가 단순한 설계변경에 불과하다거나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극복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진보성은 부정되지 않는다²⁾. 따라서 피고의 권리남용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다. 금지 및 폐기 청구에 대한 판단

1) 피고가 피고 실시 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원고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특허법 제126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피고 실시 제품의 사용, 판매, 대여, 수입하거나, 판매, 양도나 대여를 위한 청약 또는 전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사무소, 영업소, 공장, 창고에 보관 중인 피고 실시제품들의 완제품과 그 반제품(완성

2) 이 사건 특허발명은 출원 단계에서 2012. 11. 27. 심사관으로부터 '이 사건 특허출원은 선행발명 2, 3의 결합하여 구성에 곤란함이 없이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취지로 의견제출통지를 받았으나(올가 6호증), 위 거절이유를 극복하고 E일자 등록되었다.



품의 구조를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아직 완성에 이르지 아니한 물건) 모두 폐기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피고 실시 제품의 생산 금지 및 그 생산에 사용되는 설비 일체의 폐기도 함께 구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피고 실시 제품을 판매하는 외에 생산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피고 실시 제품을 생산하였다거나 생산할 우려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5호증, 갑 23호증, 갑 27호증, 갑 2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17. 10. 18. 피고가 운영하는 인터넷쇼핑몰(이하 '피고 사이트'라 한다)에서 피고 실시 제품을 18,400원에 구매하였다.

2)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될 무렵 피고 실시 제품의 가격은 피고 사이트에서 18,900원으로 제시되어 있고, ITEM REVIEW란에 '44 감사합니다', '43 중국산임', '42 진짜 싸게 비지떡입니다', '41 사람 바보로 몰지 마세요'라는 후기가 게재되어 있다.

3) 2020. 10.경 피고 사이트에서 피고 실시 제품의 가격은 15,700원, 정품 토너의 가격은 63,330원으로 제시되어 있고, ITEM REVIEW란에 '5 잉크, 토너', '4 잘 받았습니 다.', '3 배송도 빠르고 상품도 좋아요.', '2 아주잘받았습니다.', '1 잘받았습니다'라는 후기가 게재되어 있다. 그리고 해당 페이지의 하단에 '빠른배송에감사드립니다, 2020-10-16 만족', '빠른배송 감사합니다!!, 2020-10-08 만족', '잘 받았습니 다,



2020-09-22 만족', '짜고 좋아요^^사무실에서 쓸 거라 계속 여기서 시켜야겠어요, 2020-09-16 만족' 등 네이버 페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피고 실시 제품을 구매한 구매자들의 후기가 별도로 게재되어 있다.

4) 2021. 2.경 피고 사이트에서 피고 실시 제품의 가격은 15,700원으로 책정되어 있으나 구매수량란에 '품질된 상품입니다.'는 문구가 안내되고 있고, ITEM REVIEW란 가장 상단의 '5 잉크, 토너'라는 내용의 후기 위에 '6 쓰레기네요'라는 후기가 게재되어 있다. 해당 페이지의 하단에 '재생토너 자주 이용하고 있어요. 대박나세요, 2020-12-25 만족', '빠른배송에감사드립니다, 2020-12-24 만족', '선명하니 좋네요. 다음에 재구매의사 백프로입니다, 2020-12-10 만족', '잘쓰고 있습니다. 배송 제품 다 만족, 2020-12-08 만족' 등 네이버 페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피고 실시 제품을 구매한 구매자들의 후기가 별도로 게재되어 있다.

5) 사단법인 I는 중국산 금형카트리지(모조품, 이하 '중국산 금형품'이라 한다)의 수입·유통량이 급증함에 따라 2019년경 토너카트리지의 국내 시장현황에 대해 조사하였다. 그 결과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중국산 금형품의 제품 점유율이 40%에 달한다.

제품 구분	생산업체		품질력	가격대 (%)	매출액 (연간)	제품점유율 (%)
	업체규모	업체수				
정 품	- 구 C, J, K, L 등 신품사	10여업체	-	100%	7,000억 원	45%
재제조품	- 10억 내외 중소기업	200여업체	신품 동등수준	30%	1,000억 원	15%
중국금형품	- 중국등지 수입상	수입 20개사/ 유통 1,000개사	저급 품질력	15%	2,000억 원	40%

6) 중국산 금형품은 통상 재제조품 가격의 1/2 또는 1/3 가격이 대부분이다. 모델명 H의 재제조품 판매가는 31,000원 내외인데, 위 제품과 호환되는 중국산 금형품의 수입상 단가는 6,000원, 도매상 단가는 7,200원이고, 소매상 판매가는 통상 도매상 단가에



10~30% 가량 더해진 금액으로 정해진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원고가 피고 실시 제품을 구입한 시기, 피고 사이트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될 무렵부터 2020. 12. 25.까지 피고 실시 제품에 대한 구매 후기가 게재된 점, 2021. 2.에 피고 사이트에서 피고 실시 제품이 '품절'이라고 안내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적어도 2017. 12.경부터 2020. 10.경까지 피고 실시 제품을 판매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로써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특허권을 침해하였다.

피고는 피고 실시 제품의 판매가 이 사건 특허권 침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특허법 제130조는 타인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취지는 특허발명의 내용은 특허공보 또는 특허등록원부 등에 의해 공시되어 일반 공중에게 널리 알려져 있을 수 있고, 또 업으로서 기술을 실시하는 사업자에게 당해 기술분야에서 특허권의 침해에 대한 주의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데 있다.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특허발명을 허락 없이 실시한 자에게 과실이 없다고 하기 위해서는 특허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거나 자신이 실시하는 기술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믿은 점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는 것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다15006 판결 참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에게 이 사건 특허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거나 자신이 실시하는 기술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믿은 점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것처럼 피고 실시 제품의 판매가격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유통되는 재제조품 토너 가격 31,000원의 절반을 약간 상회하는 15,700원, 18,400원, 18,900원 등으로 정해진 점, 최근 온라인 중국산 금형카트리지의 수입이 급증한 점, 피고 사이트의 제품 후기에 '중국산임, 진짜 싼게 비지떡임' 등의 후기가 게재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위 가격에 판매된 피고 실시 제품이 중국산 금형품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는 특허법 제128조 제1항에 따라 피고 실시 제품을 판매함으로써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 손해배상액의 범위

1) 특허법 제128조 제4항의 적용 여부

특허법 제128조 제4항을 적용하여 특허권을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액을 특허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추정하기 위해서는 침해행위 자체로 인한 이익액이 특정되어야 하고 그 산정의 전제로서 침해행위로 인한 매출액이 특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① 2017. 12. 26.부터 2018. 10.까지 피고 실시 제품의 총 매출액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고, ② 을가 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2018년도 및 2019년도 피고 회사의 해당 연도 총 매출액이나 매출원가를 인정할 수는 있으나, 그 중 피고 실시 제품이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알기 어려우며, ③ 그 밖에 달리 피고가 피고 실시 제품을 판매하여 얻은 이익을 산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현출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피고의 특허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입은 손해액을 특허법 제128조 제4항에 따라 산정하기 어렵다.

2) 특허법 제128조 제7항에 의한 손해배상액의 산정



이 사건은 피고의 특허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원이 특허법 제128조 제7항에 따라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① 피고도 피고 실시 제품으로 인한 1년 매출액이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에 이르렀다고 자인하고 있는 점(2020. 10. 6.자 준비서면), ② 피고는 위 매출 중 1/2은 정품 재생품이고 나머지 1/2는 금형 재생품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것처럼 피고가 판매한 피고 실시 제품은 모두 중국산 금형품이라고 보이는 점, ③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기된 2018. 8. 2. 이후 피고 실시 제품을 판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것처럼 피고는 적어도 2017. 12. 26.부터 2020. 10.까지 약 34개월 동안 피고 실시 제품을 판매하였다고 보이는 점, ④ 피고 실시 제품은 중국산 금형품으로 도매상 단가가 7,200원에 불과하고 실제 피고의 피고 실시 제품 판매가는 그보다 훨씬 높은 15,400원 이상이었으므로 이익률이 높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20,0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라.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대로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인 2018. 8. 2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4. 3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 2021-05-11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권오석

 판사 김희영

 판사 차승우

별지

피고 실시 제품

1. 제품의 명칭

호환대상모델이 'H'인 토너 카트리지

2. 제품의 사진

